

「내일채움공제」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및 확인

「내일채움공제」 약관의 주요 내용			
[계약의 성립] 공제계약의 청약이 승낙된 때에는 청약자 모두가 제1회 공제부금을 납입한 일자에 공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며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			
[약관교부 및 설명의무]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전달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.			
[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취소] ①공제청약한 중소기업 혹은 핵심인력은 제1회 공제부금 납입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②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혹은 핵심인력은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			
[공제부금 납입기준] ①공제부금은 중소기업의 기여금과 핵심인력의 납입금을 합산하여 월 최소 34만원으로 하고, 1만원 단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중소기업 기여금은 월 200만원,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②중소기업의 월 기여금은 핵심인력의 월 공제납입금의 2배 이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.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기여금과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을 각각 월 14만원으로 합니다.			
[부금의 미납]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가 1개월분 이상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지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계약의 당사자인 중소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			
[계약의 해지청구]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혹은 핵심인력은 공제계약의 취소 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			
[해지환급금의 지급] 공제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공제약관 제22조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중도해지사유 발생일까지 계약자가 적립한 공제부금 납부누계액과 약관 제38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.			
[공제금의 지급청구] 공제금 수급권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약관 제27조의 구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			
[공제금의 지급] ①공제 가입 핵심인력이 약관 제 12조에 의한 공제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한 경우 핵심인력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. ②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기여금 납부누계액과 핵심인력의 공제납입금 납부누계액 및 약관 제38조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액의 합계를 핵심인력에게 지급합니다.			
[공제계약 대출]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가입 핵심인력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관 제 29조 내지 제37조에 의하여 공제계약 대출을 운용합니다.			
[제(諸)이율의 결정 및 공시] ①제(諸)이율은 약관 제39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.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(諸)이율을 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.			
[분쟁조정 신청] 계약자 및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			
내일채움공제 약관 사본을 수령하고,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(확인시 √ 표기)			
신청 핵심인력은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지 않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이며, 동 공제 신청 관련 부당한 임금조정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(확인시 √ 표기)			
신청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)의 특수관계인*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(확인시 √ 표기)			
* 특수관계인 : <input type="checkbox"/> 배우자, <input type="checkbox"/> 직계존비속, <input type="checkbox"/> 6촌 이내의 혈족, <input type="checkbox"/> 4촌 이내의 인척, <input type="checkbox"/>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			
** 특수관계인은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			
※ 공제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·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			
당해 기업과 핵심인력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으로써 「함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성과공유협약」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(확인시 √ 표기)			
회사명		대표(이사) 성명	서명
		핵심인력 성명	서명

* 계약자(중소기업, 핵심인력)는 성명(법인의 경우 법인명, 대표이사, 성명)을 자필 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 직원>

소속	직위	담당자명

< 붙임 3 >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□ 목적

-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”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-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·관세청·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·활용

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

- ① (지원이력정보)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,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
- ② (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·휴·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
- ③ (인증정보)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, 획득일, 유효기간 등

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

-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□ 동의 효력기간

-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
 - *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- 기업정보 수집 시점 :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
 - *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

※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3년 월 일
기업명 ○ ○ ○
대표자 ○ ○ ○ (인)
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